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67호 2020. 7. 7.(화)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177호 남해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규칙1

고 시

- 남해군 고시 제2020-113호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고시4
- 남해군 고시 제2020-116호 군계획시설(교통시설 : 도로, 도시계획도로 소로2-34호) 실시계획
인가 고시10
- 남해군 고시 제2020-117호 양아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고시12
- 남해군 고시 제2020-11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15
- 남해군 고시 제2020-121호 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16
- 남해군 고시 제2020-124호 도로명주소 고시18
- 남해군 고시 제2020-125호 남해군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 이동면 무림지구 자연장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20

공 고

- 남해군 공고 제2020-846호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24
- 남해군 공고 제2020-852호 공시송달 공고27
- 남해군 공고 제2020-853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30
- 남해군 공고 제2020-854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31
- 남해군 공고 제2020-873호 남해군관리계획(에코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재공람·공고32
- 남해군 공고 제2020-879호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1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45
- 남해군 공고 제2020-883호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70

회 략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860-3046, 행정 3046)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177호

남해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20년 7월 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지]

[별표] (제2조 관련)

남해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

위 반 행 위	과징금액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		
		50% 감경	30% 감경	20% 감경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	.판매 등 금액이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매체물 수량이 10개 미만	.매체물 수량이 10개 이상 ~ 30개 미만	.매체물 수량이 30개 이상 ~ 50개 미만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판매액이 1만원 미만	.판매액이 1만원 이상 ~ 3만원 미만	.판매액이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	.판매 등 금액이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고용기간이 10일 미만	.고용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 1)·2)·4)·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고용기간이 10일 미만	.고용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위 반 행 위	과징금액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		
		50% 감경	30% 감경	20% 감경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출입 인원이 3인 미만	출입 인원이 3인 이상 ~ 7인 미만	출입 인원이 7인 이상 ~ 10인 미만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0 - 113호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고시

제38차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 개정사항을 제242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의결(동의)을 거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3일

남 해 군 수

1. 내 용 :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 개정
2. 의 결 일 : 2020. 6. 5. (남해군)
3. 세부사항 : 붙임 고시문 참조
4. 열람장소 : 관련자료는 남해군홈페이지 및 남해군청 환경녹지과(환경정책팀)에 비치하였으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055-860-3252)

붙임 :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 1부. 끝.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 제정 : 1997. 12. 26.
- 개정 : 2003. 12. 12.
- 개정 : 2007. 1. 31.
- 개정 : 2007. 10. 11.
- 개정 : 2011. 3. 9.
- 개정 : 2013. 4. 12.
- 개정 : 2020. 6. 5.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된 환경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약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행정협의회의 명칭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라 칭한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를 구성하는 자치단체는 전라북도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진안군, 장수군, 전라남도 곡성군, 구례군, 순천시, 광양시, 경상남도 하동군, 남해군으로 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인과 위원 10인으로 하고, 특별위원 6인으로 하며, 자문위원은 20인 이상 30인 이하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섬진강수계 관계 행정기관인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진안군, 장수군, 곡성군, 구례군, 순천시, 광양시, 하동군, 남해군의 시장·군수로 한다.

④ 협의회의 특별위원은 수질보전관련 정보제공 및 협조를 위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전북지방환경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주암지사장,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지사장, 서부지방산림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자문위원은 협의회 소속 시·군 의회 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각 자치단체장의 추천을 거쳐 협의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사무소 위치)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에 둔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관계 자치단체 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주민 및 산업체간의 수질로 인한 이해관계 조정
2. 섬진강수질보전을 위한 관계 기관 역할 부담에 관한 사항
3. 섬진강 수계 및 연안 수질오염사고 예방과 수습 대처방안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질보전 및 개선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협의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장) ① 회장은 광양시, 하동군, 순창군, 남원시, 곡성군, 구례군, 남해군, 진안군, 임실군, 장수군, 순천시 순서인 읍면제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하여 결정하고 시장·군수가 역임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단 1회에 한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④ 회장이 유고가 있을 때는 해당기관 소속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①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 1회(년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장은 협의회에서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총회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회원 과반수가 협의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환경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의록 작성 관리 임무를 담당한다.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협의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및 이해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자치단체의 환경업무 담당과장을 위원으로 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주암지사·섬진강지사의 수계 또 수질관리 업무담당과장을 특별위원으로 실무 협의회를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환경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 안건의 실무 검토의견서를 협의위원에게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다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안건 중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실무 협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경비부담)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원기관 공동 부담금으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특별)기관 참여자의 여비는 해당 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

제12조(공동부담금 확보 등) ① 협의회 운영규약 제7조 규정에 의한 임시 총회 또는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사업에 대하여는 각 회원기관별로 부담금 경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회원기관별로 확보된 공동부담금은 협의회 회장기관 예산에 편성한다.

제13조(공동부담금의 지출) 공동부담금은 협의회 운영규약 제7조 규정에 의한 임시 총회 또는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사업의 경비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비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다.

제14조(결산보고) 공동부담금의 집행결과는 다음해 회계연도 상반기 정기 총회 시 회원기관에 결산 보고해야하며 잔액을 기관별로 배분한다.

제15조(수당지급) 자문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제16조(보칙) 이 규약에 규정한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약은 공동부담금이 회장기관에 예산편성 완료된 이후부터 시행한다. 단, 공동부담금 잔액에 의한 자율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만 예외를 둘 수 있다.

② (경과조치) 이 규약은 시행전일까지 종전의 규약에 따라 자치단체 상호간 합의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이 규약에 의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①-----.</p> <p>② -----.</p> <p>③ -----.</p> <p>④협회의 특별위원은 수질 보전관련 정보제공 및 협조를 위하여 영산강유역 환경청장, <u>새만금지방환경청장</u>, 한국수자원 공사 <u>주암댐관리단장</u>, 한국수자원공사 <u>섬진강 댐관리단장</u>, 서부지방산림청장, 익산지방국토 관리청장으로 한다.</p>	<p>제3조(구성)①-----.</p> <p>② -----.</p> <p>③ -----.</p> <p>④협회의 특별위원은 수질 보전관련 정보제공 및 협조를 위하여 영산강유역 환경청장, <u>전북지방환경청장</u>, 한국수자원공사 <u>주암지사장</u>, 한국수자원공사 <u>섬진강 지사장</u>, 서부지방산림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으로 한다.</p>
<p>제6조(회장) ① 회장은 광양시, 하동군, 순창군, <u>순천시</u>, <u>남해군</u>, <u>남원시</u>, <u>구례군</u>, <u>곡성군</u>, <u>장수군</u>, <u>진안군</u>, <u>임실군</u>으로 <u>윤번제</u>로 협의 하여 결정하고 시장·군수가 역임한다.</p>	<p>제6조(회장) ①회장은 광양시, 하동군, 순창군, <u>남원시</u>, <u>곡성군</u>, <u>구례군</u>, <u>남해군</u>, <u>진안군</u>, <u>임실군</u>, <u>장수군</u>, <u>순천시 순서인 윤번제</u>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u>협의하여 결정하고 시장·군수가 역임한다.</u></p>
<p>제10조(실무협의회)①협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자치단체의 환경업무 담당과장을 위원으로 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 <u>새만금지방환경청</u>, 한국수자원공사 <u>주암댐 관리단·섬진강댐관리단</u>의 수계 또는 수질관리 업무담당과장을 특별위원으로 실무 협의회를 구성한다.</p>	<p>제10조(실무협의회)①협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자치단체의 환경업무 담당과장을 위원으로 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 <u>전북지방환경청</u>, 한국수자원공사 <u>주암지사·섬진강지사</u>의 수계 또는 수질관리 업무담당과장을 특별위원으로 실무협의회 를 구성 한다.</p>
<p>② -----.</p> <p>③ -----.</p> <p>④ -----.</p>	<p>② -----.</p> <p>③ -----.</p> <p>④ -----.</p>
<p>제11조(경비부담) 협의회 및 실무 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원기관 공동부담금으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p>	<p>제11조(경비부담) 협의회 및 실무 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원기관 공동부담금으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u>회원(특</u></p>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

별)기관 참여자의 여비는 해당 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공동부담금 확보 등)①협의회 운영규약 제7조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 또는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사업에 대하여는 각 회원기관별로 부담금 경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회원기관별로 확보된 공동부담금은 협의회 회장기관 예산에 편성한다.

제13조(공동부담금의 지출) 공동부담금은 협의회 운영규약 제7조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 또는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사업의 경비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비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다.

제14조(결산보고) 공동부담금의 집행결과는 다음회 회계연도 상반기 정기 총회 시 회원기관에 결산 보고해야하며 잔액을 기관별로 배분한다.

제12조(수당지급) -----.

제15조(수당지급) -----.

제13조(보칙) -----.

제16조(보칙)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약은 공동 부담금이 회장기관에 예산편성 완료된 이후부터 시행한다. 단, 공동부담금 잔액에 의한 자율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만 예외를 들 수 있다.

남해군 고시 제2020 - 116호

군계획시설(교통시설 : 도로, 도시계획도로 소로2-34호) 실시계획인가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1977-127호(1977.01.27.)로 최초 결정고시된 군계획시설(교통 시설:도로)에 대해 해당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관계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6월 30일

남 해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도로)
- 명 칭 : 도시계획도로 소로2-34호(임페리얼빌리지~해피니스빌)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공사명	노선번호	위치	연장 (m)	폭 (m)	비고
도시계획도로 소로2-34호 (임페리얼빌리지~해피니스빌) 개설공사	소로2-16호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일원	82.3	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남해군수
-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로부터 12개월 이내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 붙임참조

7. 관계도면 : 실음생략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6)에 비치】

남해군 고시 제2020 - 117호

양아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고시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일원에 추진 중인 양아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이 변경되어 「농어촌정비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0년 6월 30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양아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2. 사업 목적 :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3. 위 치 :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일원(벽련, 두모, 소량, 대량마을)
4. 사업(변경)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다목적 마을회관
 - ▶ 당초 : 부지조성 2,648㎡, 건물(2층, 연면적330㎡) 1동, 비품설치, 부대공사, 조경석 162㎡
 - ▶ 변경 : 부지조성 2,648㎡, 건물(2층, 연면적330㎡) 1동, 비품설치, 부대공사, 조경석 208㎡, 뒷마당 콘크리트포장 246㎡, 캐노피 1식, 난간 37경간
 - 대량마을 진입로 확포장(변경없음) : L=110m, B=6.0~8.0m
 - 소량마을 안길확장(변경없음) : L=85m, B=4.0m
 - 지역경관개선
 - 소량마을 경관공원조성
 - ▶ 당초 : 부지조성 22,124㎡, 배수로 정비, 산책로 정비 490m(콘크리트 포장), 조경시설 6개소
 - ▶ 변경 : 부지조성 22,124㎡, 배수로 정비, 산책로 정비 490m(흙콘크리트 포장) 조경시설 4개소

- 벽련마을 진입로정비(변경없음) : 안전난간 124m, 노폭확장 100m, 교행로 2개소
 - 안내판 설치(변경없음) : 10개소
 - 지역소득증대
 - (당초) 짚라인 설치 1개소 → (변경) 특산물판매체험장 1개소(A=150㎡)
 - 지역역량강화계획(변경없음)
 - 교육 : 1식, 컨설팅 : 1식, 홍보마케팅 : 1식, 정보구축 : 1식
5. 총 사업비(변경없음) : 4,200백만원(국비 2,940, 지방비 1,260)
6. 사업기간(변경) : (당초) 2014년 2월 ~ 2020년 6월 → (변경) 2014년 2월~ 2020년 12월
7. 사업 시행자 : 남해군수(위탁 :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8. 시행계획 열람 장소 : 관련자료는 남해군청 지역활성화(지역개발팀, 055-860-3613)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비 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내 용	
합계				2463	678						
1	아산리	333-5	대	474	5					대저권	
2	아산리	333-3	대	597	6					대저권	
3	아산리	333-4	도	242	242	지○철	남해군 설천면				
4	아산리	334-9	답	182	182	주식회사 제○○건설	대구광역시 중구				
5	아산리	336-9	답	145	92	박○태					
6	아산리	336-12	대	164	6	이○라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7	아산리	333-7	답	74	63	박○이	남해군 서면				
8	아산리	336-1 5	답	407	68	남해군					
9	아산리	337-4	답	178	14	남해군					

남해군 고시 제2020 - 11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봉천(지방하천)
2. 성 명 : 정숙*
3. 주 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21번길
4. 점용목적 : 단독주택 진입로 및 마당
5. 점용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491번지(342번지 인근)
6. 점용면적 : 100㎡
7. 점용기간 : 2020. 7. 1. ~ 2025. 6. 30.

남해군 고시 제2020 - 121호

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공원, 하천)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일

남 해 군 수

가.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군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남산 공원	근린 공원	남해읍 서변리	171,190	감)9,022	162,168	건고 제406호 (1973.10.12)	미집행 구간의실효
변경	2	봉황산 공원	근린 공원	남해읍 아산리	197,440	감)79,596	117,844	건고 제406호 (1973.10.12)	미집행 구간의실효
변경	3	차산 공원	근린 공원	남해읍 차산리	95,700	감)40,305	55,395	건고 제406호 (1973.10.12)	미집행 구간의실효

2) 군계획시설(하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기점	종점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4	무림천	지방 2급	이동면 무림리 (성현천 합류점)	이동면 무림리 (남해 합류점)	2	12~29	78,000	경고 제271호 (1982.11.29)	미집행 구간의 실효
변경	4	무림천	지방 2급	이동면 무림리 83	이동면 무림리 (남해 합류점)	1.1	12~29	49,191		

나. 실효일자 : 2020. 7. 1.

다. 실효사유 : 군계획시설사업 미 시행

라. 지형도면 : 붙임 참조

마. 관계도서는 남해군 도시건축과(☎055-860-341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남해군 고시 제2020 - 124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일

남 해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965-62외 2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별 도 열 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055-860-3472~3474)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7. 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부 여

연번	중진 주소	도로명 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1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작장리 550-3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965-62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흥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2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작장리 138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803-64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흥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3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임현리 913-30, 913-32, 913-36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576-10	20090702	남해군의 중심도로
4	경상남도 남해군 이봉면 초음리 1592-4	경상남도 남해군 이봉면 남해대로 2450-3	20090702	남해군의 중심도로
5	경상남도 남해군 철진면 문의리 1184-5	경상남도 남해군 철진면 강진로 747	20090427	남해본성과 창선도 사이에 자리한 강진만과 접한 해안도로임을 반영
6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임현리 1319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강진만로 9-10	20090427	남해본성과 창선도 사이에 자리한 강진만과 접한 해안도로임을 반영
7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오곡리 311, 311-4, 311-6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고셀로 131	20090427	고현면(옛날에 현이 있던 고을)과 철진면을 잇는 도로임을 반영
8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425-3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60	20090427	남해읍에서 남해의 제2산이라 불리는 망운산으로 통하는 길임을 반영
9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194-2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송로 171	20090427	미조리(미아산 아래에 있는 마을)에서 송정리(소나무 숲 위쪽에 있는 마을)에 정자가 있었던 곳)로 연결되는 도로임
10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104-7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 8	20090427	미조리(미아산 아래에 있는 마을) 해안가를 연결한 도로임
1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신소리 76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신소로 116-19	20090427	행정구역명을 이용, 배를 만들던 곳, 신선들이 사는 땅을 의미함
12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1870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설진로 40-25	20090427	설진면 소재지를 지나는 도로임을 반영
13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1870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설진로 40-23	20090427	설진면 소재지를 지나는 도로임을 반영
14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1870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설진로 40-21	20090427	설진면 소재지를 지나는 도로임을 반영
15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리 1172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스포츠로 89-29	20090427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는 남해스포츠파크로 향하는 길임을 반영
16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중현리 232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정포로 53-12	20090427	행정구역명 이용, 옛 지명인 우물개의 한자표기임
17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죽방로 65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죽방로 69	20090427	남해의 특산품인 죽방림 멸치가 생산되는 해안을 따라 이어진 도로임을 반영
18	경상남도 남해군 철진면 덕신리 672-2	경상남도 남해군 철진면 장남로 108	20090427	독립지사 장남 윤병호선생용 기리기 위한, 장남은 석천 문의에서 출생하여 대동청년단에 가입,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노랑공원에 그의 송중비가 세워져 있음
19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633-2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탐동로 65-27	20090427	고현면 소재지를 지나가는 중심도로, 마을 중앙시장 입구에 탐이 있어 붙여진 이름임
20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 1376-6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화방로 320	20090427	보리밭, 용문사와 함께 남해 3대 사찰인 화방사가 위치하는 길임을 반영
2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죽전리 1029-4, 1029-3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1966	20090427	남면의 중심도로임을 반영, 남해의 가장 남쪽에 있다 하여 신라 신문왕때부터 남면이라 불렀다 함
22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작장리 904-7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2003번길 42	20090427	남서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0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3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간리 산15-8, 16-13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1122번길 132-17	20090427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2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4	경상남도 남해군 장신면 당저리 440	경상남도 남해군 장신면 동부대로2084번길 72-1	20090427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9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5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간리 909-1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10번길 32	20090427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6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북번리 572-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10번길 51-1	20091023	망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8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7	경상남도 남해군 철진면 남양리 653-3	경상남도 남해군 철진면 장남로284번길 39	20090427	장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8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8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북번리 265-6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진로96번길 27	20090427	화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9	경상남도 남해군 장신면 가인리 642	경상남도 남해군 장신면 흥신로410번길 21-1	20090427	흥신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1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폐 지

연번	도로명 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진로 103-6	20200527	건축물 실로 인한 현행화	
2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1180번길 35	20200529	건축물 실로 인한 현행화	
3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29-9	20200525	건축물 실로 인한 현행화	
4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송로483번길 45-3	20200525	건축물 실로 인한 현행화	

남해군 고시 제2020 - 125호

남해군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 이동면 무림지구 자연장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남해군 고시 제2020-73호(2020.04.28.)로 결정 고시된 군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에 대해 해당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주민복지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7월 1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20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남해군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사업
- 명 칭 : 이동면 무림지구 자연장지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 적 : 19,017㎡
- 규 모

구 분	합 계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	
면 적(㎡)	19,017		19,01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남해군수(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망운로9번길 12

5. 사업기간

- 착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1년 6월 30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1 참조

7. 관계도면 : 실음생략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3) 및 주민복지과(☎055-860-3854)에 비치】

남 해 군 공 보

(22) 제 667 호

2020년 7월 7일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1. 토지조서(총괄)

■보건위생시설 : 자연장지

구 분	합 계		국 유 지		공 유 지		사 유 지		비 고
	필 지 수	면 적(m ²)	필 지 수	면 적(m ²)	필 지 수	면 적(m ²)	필 지 수	면 적(m ²)	
합계	2	19,017	-	-	1	16,257	1	2,760	
임	1	2,760	-	-	-	-	1	2,760	
묘	1	16,257	-	-	1	16,257	-	-	

2. 지목별 토지조서

■보건위생시설 : 자연장지

구 분	필지 수(개소)	편입면적(m ²)	구성비(%)	비 고
합계	2	19,017	100.0	
임	1	2,760	14.51	
묘	1	16,257	85.49	

3. 소유자별 토지조서

■보건위생시설 : 자연장지

구 분	필지 수(개소)	편입면적(m ²)	구성비(%)	비 고
합계	2	19,017	100.0	
국유지	-	-	-	
공유지	1	16,257	85.49	
사유지	1	2,760	14.51	

4. 세부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외권리		비고
	읍·면	리·동	본번	부번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합계						64,642	19,017					
1	이동면	무림리	산206		묘	30,440	16,257	남해군				
2	이동면	무림리	산205		임	34,202	2,760	무* ***계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997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0 - 846호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2일

남 해 군 수

○ 양식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면적 (m ²)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남해양식 제542호	패류양식 (바닥식)	피조개	창선 서대	50,000	2020.06.24 2030.06.23 (10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591번길 38	서창만 외 2명(박숙매, 손상여)	제137호 재개발
남해양식 제543호	패류양식 (바닥식)	피조개	이동 화계	50,000	2020.06.24 2030.06.23 (10년)	남해군 이동면 화계리	화계어촌계	제138호 재개발

※ '19/20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

○ 양식어업권 소멸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면적 (m ²)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남해양식 제137호	패류양식 (바닥식)	피조개	창선 서대	50,000	2010.06.24 2020.06.23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591번길 38	서창만 외 2명(박숙매, 손상여)	
남해양식 제138호	패류양식 (바닥식)	피조개	이동 화계	50,000	2010.06.24 2020.06.23	남해군 이동면 화계리	화계어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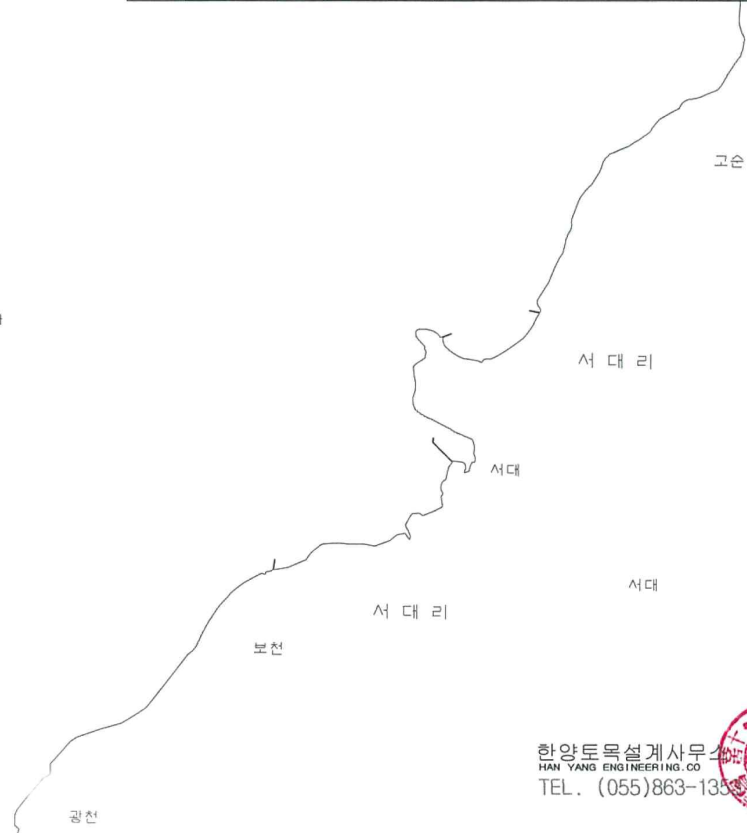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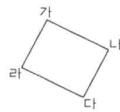
남해양식 제542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패류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대리
4. 기점 및 각점 :
 - 기 점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마)N34-00-00.000, 127-00-00.000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50,000 m²

축 척 : $\frac{1}{25,000}$

경 위 도 (WGS)			
	위 도	경 도	거 리
가	34-53-12.998	127-57-30.225	가-나 250
나	34-53-09.433	127-57-39.032	나-다 200
다	34-53-03.603	127-57-35.514	다-라 250
라	34-53-07.169	127-57-26.707	라-가 200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 YANG ENGINEERING CO.
TEL. (055)863-1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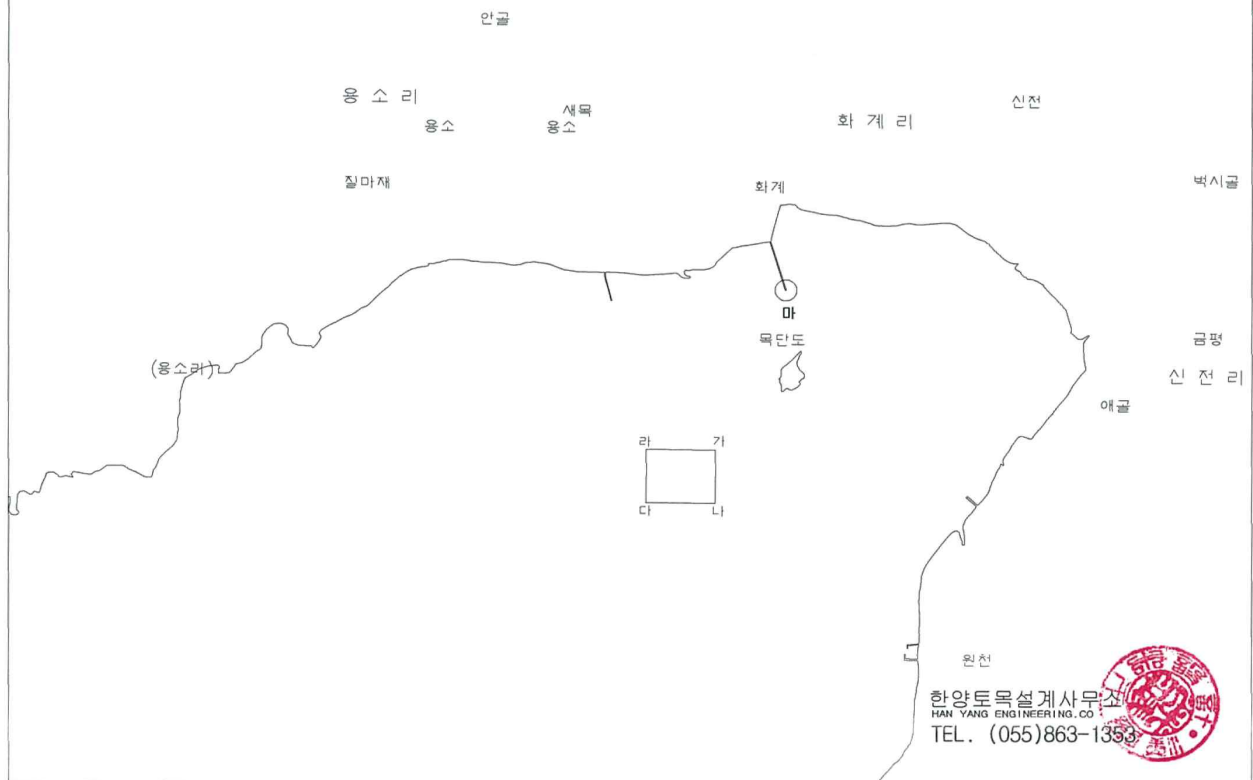
남해양식 제 543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패류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화계리
4. 기점 및 각점 :
 - ㄱ기 점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마)N34-46-31.057, E127-56-34.243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50,000 m²

축척 : $\frac{1}{25,000}$

		경 위 도		(WGS)	
	위 도	경 도	거 리		
가	34-46-11.532	127-56-24.525	가-나	200	
나	34-46-05.042	127-56-24.525	나-다	250	
다	34-46-05.042	127-56-14.694	다-라	200	
라	34-46-11.532	127-56-14.694	라-가	250	



남해군 공고 제2020 - 852호

공시송달 공고

『전골들소하천 정비공사』 시행에 따른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협의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사업인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24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19. 11. ~ 2021. 1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전골들소하천 정비공사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097번지 외 55필지	하천정비 L=1,000m 교량설치 4개소	남해군청/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2. 열람장소, 열람기간

- 열람장소 : 경상남도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 열람기간 : 2020. 6. 15.~2020. 6. 29.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0. 6. 15.~2020. 6. 29.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하천관리팀 (☎055-860-34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0 - 853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4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 자)	대표자 (성 명)	강인0	주소	남해군 삼동면 삼이로7번길
	소하천명	고순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창선면 울도리 745-1, 919, 922번지		
	면적	38㎡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교량: 2020. 6. 24. ~ 2021. 6. 23(1년) 그 외: 2020. 6. 24. ~ 2025. 6. 23(5년)		
	목적 및 사유	진입교량, 상수도관매달기, 토지의 점용		

남해군 공고 제2020 - 854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4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송봉0	주소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소하천명		중리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서면 남상리 1805번지(982번지 인근)		
	면적	244㎡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0. 1. 1. ~ 2024. 12. 31(5년)		
	목적 및 사유	경작		

남해군 공고 제2020 - 873호

남해군관리계획(에코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남해군 공고 제2019-372호(2019.03.14.)로 공람·공고한 남해군관리계획(에코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의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남해군 계획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7일

남 해 군 수

1. 건 명 : 남해군관리계획(에코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재공람·공고

2. 주요 결정(변경) 입안 내용

가. 군관리계획(에코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 1) 위 치 :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164-3번지 일원
- 2) 규 모 : 67,860m²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 내용 및 관련도서 : <붙임1>

3. 관계도서열람 및 의견 제출장소 : 남해군 도시건축과(☎055-860-3413)

4. 공람·공고기간 : 신문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방법

가. 남해군 도시건축과에서 열람 후 서면으로 제출

나. 관계도서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단체(개인)는 신문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 도시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2)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남 해 군 공 보

2020년 7월 7일

제 667 호 (33)

<붙임1>

■ 남해군관리계획(에코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에코촌 지구단위 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이동면 무림리 1164-3번지 일원	-	증)67,860	67,86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 내 용	결 정 사 유
A	에코촌 지구단위계획 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A = 67,860㎡	○ 이동면 무림리 일원에 소재한 기수지역과 해안숲을 연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단순한 통과거점이었던 이동면을 지속적인 체험 프로그램 수요 확보를 통한 숙박, 체험, 교육, 휴양을 함께 할 수 있는 차별화된 체류형 복합관광지인 에코촌을 조성하고자 함

2.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 당초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합계	67,860	100.0	
관광휴양시설용지	22,015	32.4	
힐링숙박동	10,730	15.8	
별천지캠핑장	11,285	16.6	
관광편익시설용지	11,592	17.1	
에코센터 및 체험관	5,558	8.2	
생태학습장	6,034	8.9	
녹지용지	23,242	34.3	
완충녹지	10,764	15.9	
경관녹지	12,478	18.4	
공공시설용지	11,011	16.2	
주차장	5,094	7.5	
도로	5,917	8.7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계	67,860	100.0	
관광휴양시설용지	40,325	59.4	
에코센터 및 체험관	4,709	6.9	문화 및 집회시설
에코빌리지	8,379	12.4	숙박동
힐링캠핑장	8,981	13.2	오토캠핑장
테마광장	18,256	26.9	물놀이체험장, 자연놀이터, 야외무대, 노을쉼터 등
공공시설용지	27,535	40.6	
도로	2,875	4.2	진입도로
녹지용지	24,660	36.4	
완충녹지	7,492	11.0	
경관녹지	17,168	25.3	갈대습지원 (차폐녹지대 포함)

남 해 군 공 보

2020년 7월 7일

제 667 호 (35)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당초

도로 총괄표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2	853	5,917				1	452	1,097	1	401	4,827
중로	1	401	4,827							1	401	4,827
소로	1	452	1090				1	452	1090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A	12	국지 도로	401	소로2-106 (무림리 1164-125)	동측구역계 (무림리 1164-56)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06	8	집산 도로	8,864	이동면 석평리 841-7	삼동면 지족리 291-19	일반 도로		남해군고시 제2017-6호 (2017.1.25.)	
변경	소로	2	106	8~12	집산 도로	8,864 (452)	이동면 석평리 841-7	삼동면 지족리 291-19	일반 도로			일부구간 노폭확폭

주) () 안의 연장은 예코촌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연장임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내용	결 정 사 유
-	중로3-A호선	○노선 신설 - 폭원 = 12m - 연장 = 401m	○예코촌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에 따른 도로 신설 및 변경
소로2-106호선	소로2-106호선	○일부구간 노폭확폭 - 폭원 = 8m → 8~12m, - 연장 = 452m (지구단위구역내 연장임)	

남 해 군 공 보

(36) 제 667 호

2020년 7월 7일

■ 변경

도로 총괄표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2	577	2,875	-	-	-	1	447	1,213	1	130	1,662
중로	1	130	1,662	-	-	-	-	-	-	1	130	1,662
소로	1	447	1,213	-	-	-	1	447	1,213	-	-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A	12	국지 도로	130	소로2-106 (이동면 무림리 1164-125)	에코빌리지 경계 (이동면 무림리 1164-9)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06	8	집산 도로	8,864	이동면 석평리 841-7	삼동면 지족리 291-19	일반 도로		남해군고시 제2017-6호 (2017.1.25.)	
변경	소로	2	106	8~14	집산 도로	8,864 (447)	이동면 석평리 841-7	삼동면 지족리 291-19	일반 도로			일부구간 확폭

주) () 안의 연장은 에코촌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연장임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내용	변 경 사 유
-	중로3-A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 신설 - 폭원 = 12m - 연장 = 13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코촌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에 따른 진출입도로 신설
소로2-106호선	소로2-106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구간 노폭확폭 - 폭원 = 8m → 8~14m - 연장 = 447m (지구단위구역내 연장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확보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 설치에 따른 노폭 변경

나) 주차장 결정조서

■ 당초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에코촌 주차장	이동면 무림리 1164-102 일원	-	증) 5,094	5,094		

□ 주차장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A	에코촌 주차장	○ 신설 - A = 5,094㎡	○ 에코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주차장을 신설하고자 함

■ 변경

- 주차장 : 별도 도시계획시설(주차장)로 결정하지 않음
(시설용지 내 부설주차장 설치)

2) 공간시설

가) 녹지 결정조서

■ 당초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녹지	완충 녹지	이동면 무림리 1164-19 일원	-	증) 10,764	10,764		
신설	B	녹지	경관 녹지	이동면 무림리 1164-23 일원	-	증) 12,478	12,478		

□ 녹지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 내용	결정 사유
A	녹지	○ 신설 - 완충녹지 - A = 10,764㎡	○ 에코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신설에 따라 주변 지역과의 각종 공해와 사고,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완충녹지로 결정하고자 함
B	녹지	○ 신설 - 경관녹지 - A = 12,478㎡	○ 에코촌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습지 지역을 보전 및 개선하고자 경관녹지로 결정하고자 함

■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녹지	완충 녹지	이동면 무림리 1164-19 일원	-	증) 7,492	7,492		
신설	B	녹지	경관 녹지	이동면 무림리 1164-23 일원	-	증) 17,168	17,168		

□ 녹지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A	녹지	○신설 - 완충녹지 - A = 7,492㎡	○에코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신설에 따라 주변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공해, 사고, 재해 등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완충녹지 결정
B	녹지	○신설 - 경관녹지 - A = 17,168㎡	○에코촌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습지갈대숲을 보전하여 생태체험 및 학습의 장으로 이용코자 경관녹지 결정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

■ 당초

1) 관광·휴양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I-1	I	10,730	이동면 무림리 1164-5번지 일원	10,730	힐링숙박동
II-1	II	11,285	이동면 무림리 1164-63번지 일원	11,285	별천지캠핑장

2) 관광편익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III-1	III	5,558	이동면 무림리 1164-19번지 일원	5,558	에코센터 및 체험관
IV-1	IV	6,034	이동면 무림리 1164-110번지 일원	6,034	생태학습장

■ 변경

1) 관광·휴양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I-1	I	4,709	이동면 무림리 1164-4번지 일원	4,709	에코센터 및 체험관
II-1	II	35,616	이동면 무림리 1164-8번지 일원	8,981	힐링캠핑장
II-2			이동면 무림리 1164-22번지 일원	18,256	테마광장
II-3			이동면 무림리 1164-16번지 일원	8,379	에코빌리지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 조서

■ 당초

1) 관광·휴양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I-1	이동면 무림리 1164-5번지 일원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60%	
		용적률	200%	
		높이	4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II-1	이동면 무림리 1164-63번지 일원	용도	지정용도	·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60%	
		용적률	200%	
		높이	4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2) 관광편익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Ⅲ-1	이동면 무림리 1164-19번지 일원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60%	
		용적률	200%	
		높이	4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Ⅳ-1	이동면 무림리 1164-110번지 일원	용도	지정용도	· 생태학습장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60%	
		용적률	200%	
		높이	4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 변경

1) 관광·휴양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Ⅰ-1	이동면 무림리 1164-4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2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축선	-			
Ⅱ-1	이동면 무림리 1164-8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1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축선	-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II-2	이동면 무림리 1164-22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중 화장실, 관리사무소, 급수 및 배수 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체력단련장, 놀이형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7호 관광 휴게시설 중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건폐율
		용적률	50% 이하	
		높이	1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축선	-	
II-3	이동면 무림리 1164-16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건폐율
		용적률	200% 이하	
		높이	2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축선	-	

2) 공공시설용지 : 건축물의 건축 불가

3.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결정(안)도(참고용)



4.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안)도(참고용)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m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 (m²)	
I-1	I	4,720	이동면 무림리 1164-4번지 일원	4,709	에코센터 및 체험관
II-1			이동면 무림리 1164-8번지 일원	8,981	힐링 캠핑장
II-2	II	35,708	이동면 무림리 1164-22번지 일원	18,256	테마 광장
II-3			이동면 무림리 1164-16번지 일원	8,379	에코 빌리지



5. 건축물에 관한 계획 결정(안)도(참고용)



남해군 공고 제2020 - 879호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1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19개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남 해 군 수

1. 개정 이유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의 권익을 저해하는 자치법규를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원칙적으로 공공요금 미 반환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여 반환을 의무화하여 주민의 권익 개선(안 제1조)
- 나. 법률의 근거 없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을 개정하여 주민의 재산권 침해 개선(안 제2조)
- 다. 상위법의 제명, 조문 등 개정사항 미반영 조례를 개정하여 법령 적합성 확보(안 제3조 ~ 안 제5조)
- 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5년 이내)을 적용하여 수탁자의 권익 확보(안 제6조 ~ 안 제14조)
- 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를 개정하여 법령 적합성 확보(안 제15조)
- 바. 국가유공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2조, 안 제16조 ~ 안 제18조)
- 사. 관람료의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관람객의 권익 침해 개선(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7월 21일까지 남해군수(참조 :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1) 전자우편(이메일) : rudghkzzz@korea.kr
- 2) 주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예산담당관
- 3) 팩스 : 055-860-370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기획예산담당관(전화 : 055-860-30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아래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1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조(「남해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3조(「남해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해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남해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친환경상품」이란”을 “「녹색제품」이란”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제4조,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3호,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 전단, 제3항,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3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며, 제2조 제3호 중 “친환경 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을 “녹색제품 구매·생산을”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녹색제품 구매지침”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친환경상품 구매품목”을 “녹색제품 구매품목”으로,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을 “녹색제품 구매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을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을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을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을 “녹색제품 판단기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관내기업의친환경상품”을 “관내기업의 녹색제품”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남해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의 개정) 남해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해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를 “남해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를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로 한다.

제5조(「남해군 체육진흥협회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체육진흥협회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을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남해군 장애인 한아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 장애인 한아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3년으로”를 “5년 이내로”로 한다.

제7조(「남해군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8조(「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8조제1항에 제10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9조(「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3년으로” 를 “5년 이내로” 로 한다.

제14조제1항에 제10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10조(「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의 개정)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1조(「남해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12조(「남해군 나비생태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나비생태
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7조제1항에 제9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13조(「남해군 남산근린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 남산근린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14조(「남해군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2년으로”를 “5년 이내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5조(「남해군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남해군 원예예술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원예 예술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9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17조(「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18조(「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1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19조(「남해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관람료의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제10호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

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p>제23조(사용료의 반환) <u>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u></p> <p>1. 2. (생 략)</p>	<p>제23조(사용료의 반환) <u>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u></p> <p>1. 2. (현행과 같음)</p>
---	---

남해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p>제10조(준용규정) ① <u>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u></p> <p>② <u>사업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 체납처분 할 수 있다.</u></p>	<p>제10조(준용규정) <u>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u></p>
--	---

남해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p><u>남해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u>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p> <p>1. <u>“친환경상품”이란</u>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u>「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u>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상품을 말한다.</p>	<p><u>남해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u> -----.</p> <p>제2조(정의) -----.</p> <p>1. <u>“녹색제품”이란</u> ----- <u>「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u> -----.</p>
---	---

2. “관내기업”이란 친환경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군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군과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 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매·생산촉진시책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및 이행을 위한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

2. ----- 녹색제품-----

-----.

3. -----
----- 녹색제품-----

-----.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녹색제품

-----.

제5조(구매·생산촉진시책의 수립) ① -----

녹색제품 구매·생산 -----
-----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
-----.

② -----
-----.

1. 녹색제품 -----

2. 녹색제품 -----

3. ----- 녹색제품 -----

4. --- 녹색제품 -----

5. ----- 녹색제품 -----

제6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
----- 녹색제품 구매지침-----

여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를 군 홈페이지 또는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 특수조건 규정, 구매실적의 평가 및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 략)

제7조(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 실적
2.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실적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생 략)

-----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② ----- 녹색제품 -----
-----.

1. 녹색제품 구매품목 -----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

3. -----
----- 녹색제품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구매실적 관리) ① -----
-----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
-----.

1. 녹색제품 -----
--
2. 녹색제품 -----

3. 녹색제품 -----
4. 녹색제품 -----

② 녹색제품 -----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구매의무의 범위 등) 법 제6조에 따
른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6조 각 호와 제9
조제1항 각 호의 구매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제9조(구매 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
피한 사유로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
다고 판단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친환경상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
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이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생 략)
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
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3조 각 호의 기관장은 법 제6조제1
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항의각 호에
해당되어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운
영)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
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제8조(구매의무의 범위 등) -----
녹색제품 -----
-----.
-----.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구매 예외) ① -----

----- 녹색제품 -----
-----.

1. ----- 녹색제품-----

2. 녹색제품-----

3. 녹색제품-----

4. (현행과 같음)
5. 녹색제품-----

② -----
----- 녹
색제품-----
-----.

제10조(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① ----- 녹색제품
대상품목 ----- 녹색제품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군수는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는 환경부 장관에게 친환경상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군수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소속기관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2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내기업의친환경상품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산·학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4조(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군수는 관내

판단기준-----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녹색제품 -----
-----.

③ -----

----- 녹색제품 -----
-----.

제11조(교육) ----- 녹색제품 -----

-----.

제12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① -----
-----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
-----.

② ----- 녹색제품 -----
-----.

제13조(산·학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① -----
----- 녹색제품 -----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

<p>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게 <u>친환경상품</u>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p> <p>1. ~ 6. (생 략)</p> <p>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u>친환경상품</u>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p> <p>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 등이 <u>친환경상품</u>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5조(구매실적 평가 등) 군수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u>친환경상품</u> 구매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p> <p>제16조(포상) 군수는 <u>친환경상품</u>의 생산·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 기관·단체 및 개인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p> <p>제17조(사무분장) <u>친환경상품</u>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p>	<p>----- --- <u>녹색제품</u>----- -----.</p> <p>1. ~ 6. (현행과 같음)</p> <p>② ----- <u>녹색제품</u> ----- -----.</p> <p>③ ----- <u>녹색제품</u>----- ----- ----- -----.</p> <p>제15조(구매실적 평가 등) ----- ----- <u>녹색제품</u> -----.</p> <p>제16조(포상) ----- <u>녹색제품</u>----- ----- -----.</p> <p>제17조(사무분장) <u>녹색제품</u>----- ----- -----.</p>
---	---

남해군보도구역내 횡단차도설치에 관한조례

<p><u>남해군보도구역내 횡단차도설치에 관한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u>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u>의 규정에 의한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p>	<p><u>남해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조례</u></p> <p>제1조(목적) ----- ----- 「<u>도로법</u>」 제35조 및 제91조----- -----</p>
--	---

<p>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p>
<p>남해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 ----- -----.</p>
<p>남해군 장애인 한아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6조(위탁운영) ① ~ ③ (생략) ④ 제1항의 위탁기간은 <u>3년</u>으로 하고 기간만료에 따른 위탁신청은 그 만료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하여야 한다.</p>	<p>제6조(위탁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5년 이내</u>로 ----- ----- -----.</p>
<p>남해군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8조(센터의 운영) ① (생략)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u>2년</u>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운영 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생략)</p>	<p>제8조(센터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u>5년</u> ----- ----- -----. ③ (현행과 같음)</p>
<p>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 조례</p>	
<p>제4조(관리·운영 및 위탁관리) ①·② (생략) ③ 위탁관리 기간은 <u>3년</u> 이내로 한다. ④·⑤ (생략) 제8조(관람료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술촌의 관람료</p>	<p>제4조(관리·운영 및 위탁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5년</u> -----. ④·⑤ (현행과 같음) 제8조(관람료 등 감면) ① ----- ----- -----.</p>

<p>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1. ~ 9.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② (생 략)</p>	<p>-.</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1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p> <p>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p> <p>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1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15. 「특수입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p> <p>1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p> <p>② (현행과 같음)</p>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p>제6조(위탁계약 등) ①·② (생 략)</p> <p>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군수는 기</p>	<p>제6조(위탁계약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5년 이내로 -----</p>

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4조(관람료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 9.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제14조(관람료 등 감면) ① -----

-----.

1. ~ 9. (현행과 같음)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제33조(위탁관리 및 지원) ①·② (생 략) ③ 위탁기간은 <u>2년</u>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 ⑦ (생 략)	제33조(위탁관리 및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5년</u> ----- ----- ----- ④ ~ ⑦ (현행과 같음)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①·② (생 략) ③ 위탁기간은 <u>3년</u>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제20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5년</u> ----- ----- ④·⑤ (현행과 같음)
남해군 나비생태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관리·운영 및 위탁관리) ①·② (생 략) ③ 위탁관리 기간은 <u>3년</u> 이내로 한다. ④·⑤ (생 략) 제7조(관람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생태관의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 8. (생 략) <u><신 설></u> <u><신 설></u>	제4조(관리·운영 및 위탁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5년</u> ----- ④·⑤ (현행과 같음) 제7조(관람료 감면) ① ----- ----- ----- 1. ~ 8. (현행과 같음)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② · ③ (생 략)</p>	<p>11. 「<u>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p> <p>12. 「<u>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13. 「<u>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14. 「<u>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p> <p>15. 「<u>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16. 「<u>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u>」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남해군 남산근린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p>	
<p>제5조(관리 및 운영) ① · ② (생 략)</p> <p>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p> <p>④ (생 략)</p>	<p>제5조(관리 및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5년 ----- ----- -----.</p> <p>④ (현행과 같음)</p>
<p>남해군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p>	
<p>제8조(위 · 수탁운영 계약) ① · ② (생 략)</p>	<p>제8조(위 · 수탁운영 계약) ① · ②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② · ③ (생 략)</p>	<p>1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p> <p>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1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p>	
<p>제11조(이용료의 감면) ① · ② (생 략)</p> <p>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p> <p>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 18 민주국가유공자</p> <p>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p>	<p>제11조(이용료의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현행과 같음)</p> <p>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p> <p>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p>

<p><u>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u></p> <p>5. ~ 12.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④ ~ ⑧ (생 략)</p>	<p><u>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u></p> <p>5. ~ 12. (현행과 같음)</p> <p>13. 「<u>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u></p> <p>14. 「<u>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p> <p>15. 「<u>특수입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u></p> <p>16. 「<u>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p> <p>17. 「<u>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u></p> <p>④ ~ ⑧ (현행과 같음)</p>
<p>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p>	
<p>제13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② (생 략)</p> <p>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u></p>	<p>제13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u></p>

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 18 민주국가유공자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 ~ 12.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 ⑤ (생 략)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 12. (현행과 같음)

1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④ · ⑤ (현행과 같음)

남해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관람료) ① · ② (생 략)

<신 설>

제7조(관람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관람료의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제10호에 따른다.

[별표]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
(제17조 관련)**

1. 환경부서 : 녹색제품 소비·생산정책 총괄

- **녹색제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회계부서, 건설부서, 기관(제3조의 기관, 이하 같다)에서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
- 회계부서, 건설부서, 기관에서 제출한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
-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기준 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판단기준에 대한 관리
 -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의 발굴 등
-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
 - **녹색제품** 생산촉진을 위한 관내기업 지원정책 마련 및 시행
 -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
- 그 밖에 **녹색제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

2. 회계부서 : 기관의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 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환경부서로 제출
-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초까지 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 **녹색제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녹색제품** 사용 명시
 -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 시 친환경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등

3. 건설부서 : 녹색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

-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녹색 건설자재 사용 등
-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 말까지 전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사용된 녹색 건설자재 사용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 지방서 개정 등 녹색 건설 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
-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등에 대한 녹색 건설자재 구매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남해군 공고 제2020 - 883호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남 해 군 수

○ 양식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544호	복합양식 (수하식)	기타 해면 패류/기타 해면 해조류	서면 장항	50,000	2020.07.03 2030.07.02 (10년)	남해군 서면 서상리	장항어촌계	제140호 재개발

※ '20/21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

○ 양식어업권 소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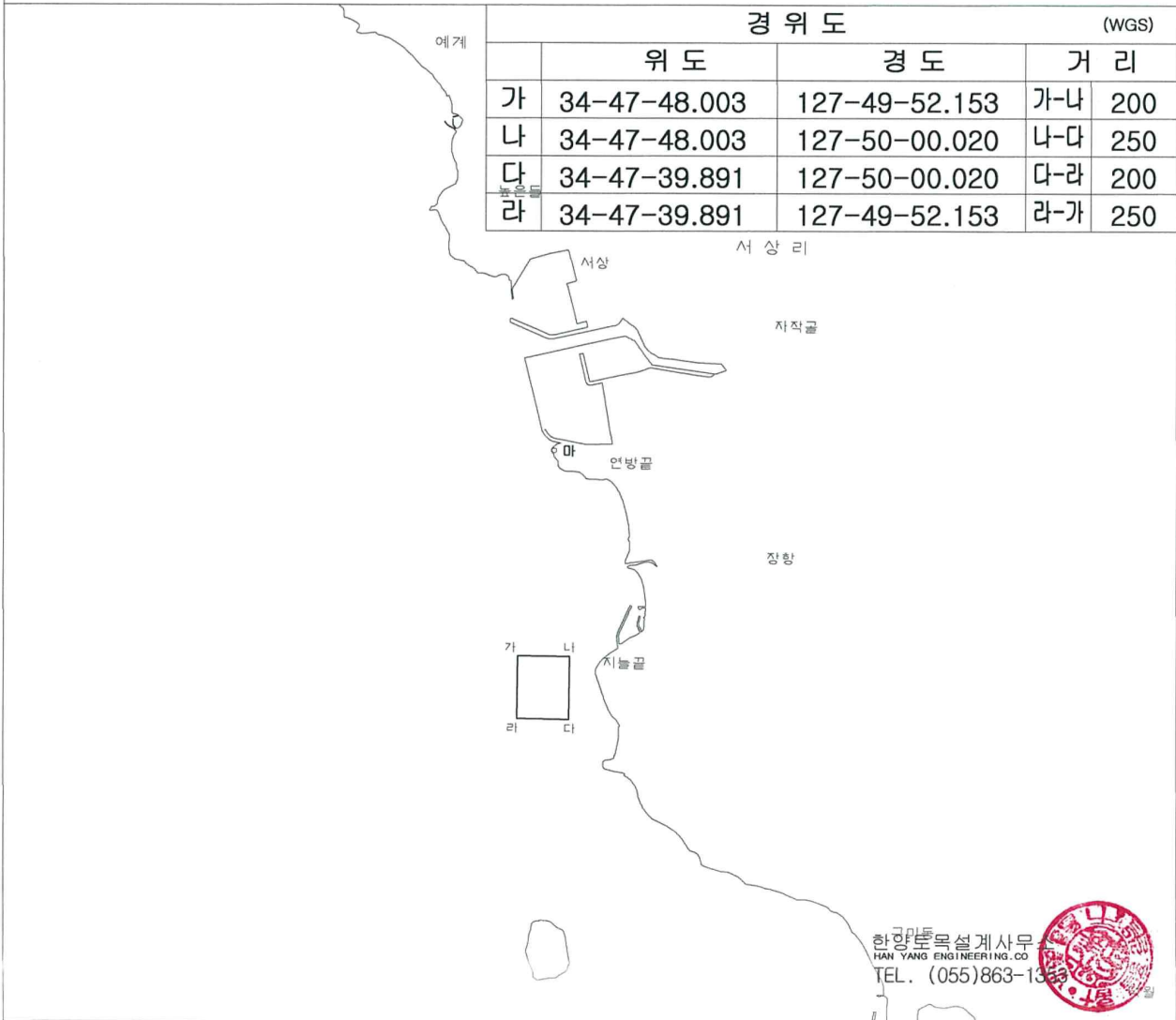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140호	복합양식 (수하식)	기타 해면 패류/기 타 해면 해조류	서면 장항	50,000	2010.07.03 2020.07.02	남해군 서면 서상리	장항어촌계	

남해양식 제 544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복합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수하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장항
4. 기점 및 각점 :
 기 점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마)N34-48-14.58, 127-49-57.19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50,000 m²

축척 : $\frac{1}{25,000}$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 YANG ENGINEERING CO.
 TEL. (055)863-1333